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0123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0123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9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안소양

변론 종결 2022. 10. 19.

판결 선고 2022. 11.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9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868,338원 및 그 중 203,011,519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4.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 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으로,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2. 원고의 피고 회사, 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2.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으로, 제6면 제9행의 "G"을 "D"으로, 제6면 제12행과 제8면 제15행, 제9면 제11행, 제10면 제18행, 제11면 제3항, 제11면 4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로, 제9면 제10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기초사실" 다음에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제11면 제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J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 E은행 부천지점장인 K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모두 합의한 후 형식상 공인중개사 J에게 매매계약서의 작성만을 의뢰한 것이어서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도 이례적인 점, ⑥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로서, 당시 E은행 부천지점장인 K도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제1심 공동피고 B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K가 E은행과 오래 전부터 거래하여 친분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매물을 소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토지 매입에 관심이 있어 유튜브로 토지 경매 공부까지 하였다고 하는 피고도 K에게 매도인의 경제사정과 매도경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던 제1심 공동피고 A의 공장과 그 부지로서, 건설자재인 흙막이판넬 제조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사업에 정확히 부합하는 공장과 부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이를 매수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도장부스공장이 일부 임차하고 있어 그 전부를 바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설령 임차된 부분은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필요 부지를 넘어서까지 매수하는 것도 이례적이다.)"을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9, 20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2. 12. 19.까지는"을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22. 10. 19.까지는"으로, 제13면 제5행의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인 2022. 12. 19.까지는"을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22. 10. 19.까지는"으로, 제13면 제8, 9행의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인 2022. 12. 19.까지는"을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22. 10. 1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제1심에서 인정한 제1심 변론 종결일인 2021. 12. 9.까지는"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영주

판사김형배

판사김제욱

별지

1) 원고는 2021. 4.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21. 4. 12.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8%'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은 같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1항과 동일하게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은 2021. 2. 25.이어서 기산일인 2021. 4. 12.보다 이전의 날짜이므로, 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은 이들에 대한 '2021. 4.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의 오기로 보인다.